

#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7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3. 14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3. 1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2. 3. 25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 2.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심의기구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위원장을 구성코자 함.

### 3.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공무원 1인과 민간인 1인으로 민·관 공동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 제도는 폐지하고, 실과 소속공무원 중 위원 임명사항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 제25조(위원회구성)에 의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기획감사실장)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규제개혁 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심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공무원 1인과 민간인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실과 공무원중 위원 임명사항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3.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